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장 소 감사원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

(17시58분 개의)

○ 위원장 정청래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죄로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윤 위원 아까 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정말 이렇게 감사원이 무례로 회의록을 제출 않는다는 국민들은 정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번에 국회에서 관저를 육체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의 답변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 지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쩌면 이렇게 검찰을 맑아 가고 있는가, 정말 월성원전 감사나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등에서 볼 때 윤석열 용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도 또 절차도 모두 위법한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부터 검찰총장까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정말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위아래도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간 1400억이나 예산을 쓰면서 오늘 특활비·택시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정말 국회의 예결산심사권도 침해하고, 이렇게 제2의 검찰을 맑아 가는 감사원을 보니까 절망하고 국민들은 그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 제발 검찰 맑아 가지 말아 주세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질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사라지면 감사원에 혹독한 국민적 비판과 재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원의 의결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 모두 고발했으면 좋겠는데 국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이라도 고발을 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김건희를 비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감사원,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고발하실 방침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한번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이 없어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말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발언권이 없다니까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고 말씀……

○**위원장 정청래** 지금 국회의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 저를 고발하신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위원장 정청래** 국회 회의라니까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기회를 주시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아니, 위원장님께서 늘 저보고 끼어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끼어드는 게 아니고,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위원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국정감사는 끝났습니다. 원래는 퇴장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래도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1분이면 됩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저도 1분이면 됩니다.

○**박균택 위원** 사무총장이 특별히 저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응한다고 한다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원래는 감사원 직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위원장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건태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아까 국힘당의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께서 ‘조은석 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검증을 나왔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조은석 위원을 개인 자격으로 모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원을 상대로 검증을 나왔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의 위원실이라든지 조은석 위원이 작성한 문건을 다 감사원의 일부로서 우리가 검증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지금 이 의결과 관계없이 아까 확인을 미쳐 못 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서를 위원 3분의 1 연서명으로 했는데 조은석 위원이 3분의 1 연서명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원감사위원 조은석**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감사원감사위원 조은석** 제가 마치 기관의 의견과 달리 행동한 것처럼 비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의견을 구하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률가입니다. 사무처에서 저희한테 배부해 준 감사계획 사전설명서의 감사실시 계획서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원으로 되어 있고 현장 및 문서 검증으로 되어 있고 감사 위원 작성 의견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람이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각자 자기 의견을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것이 정식 회의록에 첨부된다거나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각자 작성한 위원이 자기가 알아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것 받은 것은 폐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작성자고 결국 의견서는 낸 사람, 다른 위원도 내신 분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보관자이기 때문에 의견서에 대한 문서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제가 대상이 됩니다. 제가 대상이 되고 제 사무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에 따라서 현장과 문서 검증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은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입도 방해할 수가 없고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장검증도 그렇고 법의 취지가 결국은 들어와서 문서를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저는 응하는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드리고 제출 요구에는 응할 수 없으나 법에 따른, 의결에 따른, 법적 요건에 따른 것 이기 때문에 저는 문서검증에는 응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께서 밖에서 개인, 개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사원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의결하신 자료가 여기 구성원 중 누군가의 사무실에 있다면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그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개인적인 행동이고 개인적인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명백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제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그게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해 보세요.

○감사원감사위원 조은석 그것은 제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아까 현장검증과 문서검증은 그 자체로서 실행, 응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응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그 점은 좀……

왜냐하면 감사원 구성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방송을 보고 있는데 마치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감사원 자체의 의사결정과 달리 행동한다라는 그런식의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명확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하나의 절차를 저희가 밟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의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조은석 감사위원의 말씀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현장검증을 했으니까 현장검증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준법정신이지요. 오히려 감사원장이 지금 그 준법정신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위원장님, 건의드립니다. 제가 고발을 당할 입장인데……

○위원장 정청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거예요!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기회를 범상 드릴 수가 없다고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동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감사위원 조은석
사무총장 최달영